

의안번호	제49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1월 1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1

제출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현재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전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5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심의할 안전이 있을때에 위원회를 구성 또는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안전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해산 또는 위원이 해임(해촉)된 것으로 간주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
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u>보궐위원의 임기</u>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생략)</p> <p>② <u>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u></p>	<p>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p> <p>1. ~ 3.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안전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삭제></p>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u> <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u> <u>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u>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u> <u>한다.</u></p>	<p><u>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9조</u> <u>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u> <u>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u> <u>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u> <u>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u> <u>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u> <u>본다.</u></p>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u> <u>무원이 아닌 위원</u>의 임기는 2년 <u>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u> <u>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u> <u>로 한다.</u></p> <p><u>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u>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u> <u>할 수 있다.</u></p> <p><u>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u> <u>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u> <u>려운 경우</u></p> <p><u>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u> <u>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u> <u>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u> <u>는 경우</u></p> <p><u>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u> <u>경우</u></p>	<p><u>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5조</u> <u>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u> <u>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u> <u>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u> <u>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u> <u>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u> <u>본다.</u></p>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u></p> <p><u>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p>	<p><u>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안전 처리 등 운영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맹은영